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1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 수련관의 운영내용 및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행사업을 정함.(안 제6조)

-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10조)
-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 및 감독 규정을 정함으로써 수탁업무의 효율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회관과 같이 위탁형식이 될 텐데 파견공무원을 내 보낼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파견은 안된다고 생각되며 문화재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시설 관리가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어 세부적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기관과 협의가 되면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내용으로 봐서 여성회관장 청소년수련관장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에 관한 부분은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며 민간위탁 되면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맡게 될 것이므로 공무원을 관장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78호
의결 연월일	2006. 1. 20 (제124회)

제안년월일 : 2006년 1월 18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면제자 규정 중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한 것은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조례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적용 기준으로 조문을 수정.
- 소외계층의 폭 넓은 배려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수행사업의 수강료 면제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세대뿐만 아니라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공부조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과 부자가정 세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면제자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수정. (안 제10조 제2항 제3호)
- 청소년수련관 수행사업의 수강료 면제자로 차상위 계층과 부자가정 세대를 포함.(안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2항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안 제10조 제3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3항 제4호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자가정 세대”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③ (생략)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의한 수급자 2.-3. (생략) 4. 「<u>모자복지법</u>」에 의한 보호받는 모자 <u>가정 세대</u> 5.-6 (생략) ④ (생략)</p>	<p>제10조(사용료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3. <u>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u></p> <p>③ (제정안과 같음)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의한 수급자 <u>및 차상위 계층</u> 2.-3. (제정안과 같음) 4. 「<u>모·부자복지법</u>」에 의한 보호받는 <u>모·부자가정 세대</u> 5.-6.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p>

[수정안 포함]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 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련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련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시장은 수련관 운영시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수련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시장이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운영시간) 수련관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능)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 사업
4. 청소년 복지증진 및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이용)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가족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7.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사용료 및 수강료는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2.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반환

제12조(변상) ①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기타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13조(위탁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2. 기타 수련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수련관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